<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 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 멀리바안경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20100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2008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40910]

http://www.eyegentry.com eyegentry@gmail.com



정 보 공 개 서

아이젠트리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25.

아이젠트리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14, A-205호 (좌동,세종월드프라자)

가맹본부 전화 : 051-702-8851 가맹본부 FAX : 051-702-8852

담 당 부 서 : 가맹본부 기획팀 (051-701-885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 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 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 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 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 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 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멀리바안경 외 2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14, A-205호 (좌동,세종월드프라자)				
아이젠트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	2011.12.09		2011.12.09	마용덕	051) 702–8851	051) 702–8852	
	법인등록번호	180111	-0785965	사업자등록번	호 617-	81-9538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아이젠트리	멀리바안경	부산광역시 해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14, A-205호			
가맹본부	(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	외 2개	마용덕	051-702-8851	051-702-885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마용덕	멀리바안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14, A-205호				
대표이사		외 2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마용덕	051-702-8851	051-702-885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01.01		멀리바안경	부산광역시 해운다	l구 해운대로 814,	A-205호		
임원 (이사)	마재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OINI)		외 2개	마용덕	051-702-8851	051-702-885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멀리바안경 (00점)	
상 호	멀리바안경 (00점)	
상표(서비스표)	ႍ으멀리바안경	상표권 출원번호: 40-2019-0091041 출원공고번호: 40-2020-0012370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 순이익
2021년	2,759,939	1,540,657	1,219,281	4,347,221	212, 127	282,927
2022년	3,053,919	1,550,627	1,503,293	4,762,783	322,745	284,011
2023년	3,438,143	1,586,220	1,851,923	5,676,685	369,678	348,630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_ 전원여구 	원년여구 이금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마용덕	대표이사	2011.12. ~ 현재	아이젠트리(주)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마재민	이사	2011.12 ~ 현재	아이젠트리(주)이사	경영 지원		
가맹사업	배수경	감사	2017.08 ~ 현재	아이젠트리(주)감사	경영 지원		
관련 임원	황나겸	황나겸 감사	2017.07.~ 현재	아이젠트리 마린시티점 대표	총괄		
			2012. 08 ~ 2017.07.	아이젠트리 장산점 대표	총괄		
			2011.12. ~ 현재	아이젠트리(주) 감사	가맹점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AI &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2년 12월 31일	1	3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아이젠트리 가맹본부 가맹사업 경영	2011.11. ~ 현재	아이젠트리(EYE GENTRY) (등록번호: 20140371)이라는 브랜드의 사업 경영	
71321	(주)	210/18 00	예정	아이파인(EYE FINE) (등록번호: 20180106)이라는 브랜드의 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멀리바안경 (상표권)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료	2020.02.07 출원 2020.04.24 등록	출원4020190091041	김지연, 아이젠트리(주)	2030.04.24
(8111)		2020.04.24 8 9	등록4020200041702		
eye:street (상표권)	상표 사용	2015.05.27 출원 2015.12.28 등록	출원 4020150038708 등록 4011510600000	아이젠트리(주)	2025.12.2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멀리바안경 가맹사업 현황

1. 멀리바안경을 시작한 날 : 2021년 01월 01일

2. 멀리바안경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아이젠트리 (주)	멀리바안경	마용덕	2021.01.01 [~]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세종월드프라자 A동 205호

3. 멀리바안경 업종

영업표지	업 종				
G 71110174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멀리바안경	안경	안경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멀리바안경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l	ΛIS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_	1	1	_	1	1	_
Ì	대구	1	1	_	1	1	_	1	1	_

5. 바로 전 3년간 멀리바안경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1	0	0	0	1
2022	1	0	0	0	0	1
2023	1	0	0	0	0	1

6. 멀리바안경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멀리바안경] 외 [2]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어조		가맹점/직영점의 수		
十七	성오/이금	임립표시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아이젠트리 (주)	아이젠트리 (EYE GENTRY)	20140371	도소매	66/0	69/0	70/0
가맹본부	아이젠트리 (주)	아이파인 (EYE FINE)	20180106	도소매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가맹계약서 상 공급물품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안경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우며, POS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 지 않습니다.

당사의 멀리바안경 외 다른 영업표지인 아이젠트리(EYE GENTRY)의 경우 가장 신빙성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가맹점으로부터 제출받아 작성되 어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을 위해 멀리바안경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요청하였으나 당사는 받지 못했으며, 당사는 [멀리바안경]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허위, 과장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추정결과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으로 허위, 과 장된 가상의 추정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멀리바안경]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멀리바안경]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	1,095일 (3년 0개월 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기업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기업은행	해운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64 화목데파트	051-703-4295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아이젠트리(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멀리바안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후 20 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 환)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 계	5,500
가 입 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 ² 당 기준 (약 30평 기준)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90,00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 자율 선정업체	60,000	2,0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제작 및 부착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 자율 선정업체	6,000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80,000		물품 공급 10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콘택트렌즈 제외금액 입니다.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4,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 전 계약취소 (그동안 소요비용 제외)	소모품비, 전단지, 이벤트 등
광학 장비 등	가맹점 사업자 선정업체	40,000 (검안실 1실 기준 기본 검안 및 장비 기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설치 전 계약취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 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공사대금의 약 10%를 내부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1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1	(전화:051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
ı	-702-8851)	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안경사 자격증을 소유할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안경사 자격증 소유자 권장	안경사 자격증 소유자 권장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급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전 지역 330	당월 10일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후 지정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시공업체 또는 가맹본부	3,000~5,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 용	시공업체 또는 가맹본부	5,000~ 50,000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합의 후 비용은 가맹점 부담
점포환경 개선 비용	시공업체 또는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 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점이 본부와 계약상에서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경영지도	경영상태, 고객응대기법, 검안 기법 ,	분기별 1회	문의: 본사 감사팀
00/17	재고관리, 안경원인테리어 점검	. 건기교 1회 	(051-702-885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 없음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 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 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멀리바안경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신규교육 (제품, 검안, 시스템 전반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비용은 35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가맹본부인 아이젠트리(주)에 지급하여야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멀리바안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은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인테리어 (진열장 등)	권장사항		
홍보 (온라인 광고 등)	권장사항		사업의
광학장비 (자동옥습기 외)	권장사항	위반 시 책임은 없습니다.	동일성을 위한 권장 사항
상품 (안경테,안경렌즈,콘택 트렌즈,안경케이스 등)	권장사항		
POS 사용료 (아이젠트리 시스템)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시스템 용역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사업의 동일성을 위한 강제 항목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아이젠트리 본사에서 고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일부 품목의 가격은 협력업체의 적정 권장 가격의 준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특별한 제 한은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 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희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멀리바안경
안경 및 콘택트렌즈 관련 가맹사업	아이젠트리(EYE GENTRY)
	아이파인(EYE FINE)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아울렛, 종합병원 등)은 반경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 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 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나)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다)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 하여 '멀리바안경'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멀리바안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기메저	아이젠트리	안경테, 안경렌즈,	[아이젠트리(EYE GENTRY)]
│ 가맹점 │	(EYE GENTRY)	콘택트렌즈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음
가맹점	아이파인	안경테, 안경렌즈,	[아이파인(EYE FINE)]
	(EYE FINE)	콘택트렌즈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주)	https://smartstore.naver.com/todayeyewear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용품	비대면 거래
온라인	쿠팡(주)	https://store.coupang.com/vp/vendors/A00352696/products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용품	비대면 거래
온라인	위메프(주)	https://front.wemakeprice.co m/partnermall/todayeyewear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용품	비대면 거래
온라인	11번가(주)	https://shop.11st.co.kr/stores/ 953354?pdpPrdNo=6381060449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용품	비대면 거래
온라인	자사몰	https://www.eyestreet.co.kr/ shop/list.php?ca_id=10	안경테, 선글라스	비대면 거래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맹점 매출이 파악되지 않아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멀리바안경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Α.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Ε.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6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상품 등에 관한 대금 등 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3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35조 1항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3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본부의 상권 내에서 타상호로 동정영업하거나, 타 인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35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 우	35조 2항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5조 2항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 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35조 2항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 시 35조 2항 4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고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승인이 있어야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 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 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기획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 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 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상속인에게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이 면제됩니다. 단,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 속, 대리행사, 위탁 등 신청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당사 담당팀 검토(관계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_	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사업 자간 반경 500m의 지역 내에서 귀하가 멀리바

안경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 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안경원 (일반인에게 안경 및 렌즈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그 무이 기회의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멀리바안경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다음의 사항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12시간) 권장	설날, 추석, 보수교육 당일 휴무 권장	문의: 기획팀 (051-702-885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6개월	본사 기획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6개월	본사 CS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4회/6개월	본사기획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아이젠트리(주)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멀리바안경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교그 서건	부담	비율	보다 저 뒤	шП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임			
개별 행사	 행	사에 따라 달	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 단위로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 며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30%이상이 판촉활동의 시행여부 및 판촉행사의 주요내용에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판촉활동을 시행하지 않으며,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판촉행사의 주요내용(판촉시기, 판촉물품의 종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비용분담 기준)을 포함한 판촉계획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전단·리플렛·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부에 최소 행사 3일전에는 통보 및 사전 협의를 하여야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갑" 또는 "을" 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최초가맹금의 10%
- ②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 최초가맹금의 30%
- ③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 최초가맹금의 50%
- 4) "을"이 제37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37조 제3항의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일천만원정(₩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을"이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 일천만원정(\mathbb{\pi}10,000,000원)을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는 위약금으로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 판매된 모든 제품 매출의 배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6)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위약벌 규정은 "갑" 또는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 7) "을"의 귀책사유 또는 "을"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하기로 한다. 배상액은 계 약 해지 일을 기준으로 <u>남은 계약일 × 금삼만원정(₩30,000원)</u>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 한도는 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으로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주) 해운대지점에 가맹금예치	D-29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 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 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 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 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 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 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 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 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기획팀 (051-702 -88 5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 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기획팀 (051-702 -88 51)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멀리바안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CS교육, 브랜드 교육, 검안교육	집단 강의 및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및 관리자 변경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가맹계약자 및 관리자)
정기 보수 교육	CS교육, 브랜드 교육, 검안교육	집단 강의 및 실습교육	매년 1회 이상 가맹점과 협의 후 결정	협의 후 면제 가능
비정기 보수 교육	본부가 판단하여 가맹점의 매출이 부진할 때	집단 강의 및 실습교육	가맹점과 협의 후 결정	협의 후 면제 가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멀리바안경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다
신규 교육	2일	무료	최초 계약시 및 관리자 변경 시(가맹계약자 및 관리자) 필수이수
정기 보수 교육	1일	협의 후 측정	협의 후 면제 가능
비정기 보수 교육	1일	협의 후 측정	협의 후 면제 가능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채용한 관리자 모두가 가맹계약 체결 및 관리자 변경 후 1개월 이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맹점 관리자만의 교육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와 관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규 교육은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 및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대표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법인)이 실질적 으로 관리(점포의 수익 및 지출)하지 않으므로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없습 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해당사항 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기획팀(051-702-885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 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 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eyegentry.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